

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국

미국 법무부, General Electric사에 동의 판결
- 제한적 유지·관리업정 배제
- 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각을 조건으로 이노씨브사 취득 승인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지난 7월 14일 General Electric사(이하 「GE사」라 한다)간에 의료기기 및 MRI나 CT촬영(scanning)과 같은 의료용 영상기기의 유지·관리(Maintenance)에 관계되는 2개의 개별 사건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동 분야에서의 경쟁이 촉진된다.

1996년 GE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제소를 해결한 동 동의판결에서 GE사는 전 미국의 500개 이상의 병원과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내용에 부과하고 있는 제한을 배제하였다. 동 제한은 라이센스를 받은 병원이 다른 병원이나 진료소의 의료기기를 유지·보수(Maintenance) 할 때에 GE사와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사건에서 GE사는 병원

의 의료용 영상기기의 유지·관리회사인 이노씨브 테크놀로지사의 취득 계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의 우려는 이노씨브사의 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을 매각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법무부의 결정은 의료기기의 유지·관리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시키고 병원 등 의료업자의 지출을 절감하고 모든 소비자의 의료비의 지출 절감을 촉진하게 된다」고 크라인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국장은 언급하였다.

세계 최대의 의료용 영상기기 제조업자인 GE사는 모든 종류의 브랜드 의료기기에 대한 유지·관리의 최대 용역회사이기도 하다. 동시에 유지·관리의 공급에 있어서 자신의 의료기기를 유지·관리를 하는 독립된 서비스업자 및 병원과 경쟁관계에 있다. 병원 내에 유지·관리 부문을 가지고 있는 많은 병원도 다른 인근 병원이나 진료소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와 같은 병원은 GE사 외에 동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서비스업자이기도 하다.

병원 내에 유지·관리 부문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병원의 기사(Engineer)가 의료용 영상기기의 유지 관리나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현격히 빠른 특제 소프트웨어도 GE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GE사의 라이센스 제공에 대하여 제소한 소장에 의하면, GE사는 1996년 이전부터 상기의 특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원하고 있는 병원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의료시설에서 어떤 종류(GE사의 것이든 타제조업자의 것이든 관계없이)의 의료기기의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GE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GE사 제품의 CT촬영기(Scanner)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GE사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받은 병원은 인근 진료소에서 시멘스사가 생산한 MRI나 초음파 Unit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해 주지 않은 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GE사가 부과한 상기 제한을 배제함으로써 병원은 낮은 비용과 양질의 서비스로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크라인 국장은 언급하였다. 이러한 제한은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유지·관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의료용 영상기기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관계자는 자신의 의료기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30억불 이상의 비

용을 지불하고 있다.

동 라이센스 제공에 대한 소송의 동의판결(안)에 따라 GE사는 현존하는 라이센스 내에서 제한조항을 무효로 하고, 앞으로 병원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기의 유지·관리에 제한을 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의료용 영상기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또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법무부는 7월 14일 이노사프사의 의료용 영상기기의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PREVU"라 칭하는 소프트웨어의 제작부문을 매각하는 데 합의하고 라이센스 제공에 대한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GE사가 이노씨브 테크놀로지사를 매수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텍사스주 앨링تون에 본사를 둔 이노씨브사는 의료용 영상기기의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독립사업자이다. 동사는 전 미국의 병원이나 기타 의료시설에서 의료용 영상기기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GE사와 경쟁하고 있다.

이노씨브사의 소프트웨어인 PREVU는 GE사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 외에 영상기기의 몇 개의 모델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작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동 소프트웨어 부문을 매각함으로써 다른 유지·관리업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의 환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경쟁의 이익을 얻게 된다. 더 육이 동 라이센스 제공에 대한 소송의 화해로 병원 내에 유지·관리부문을 가지고 있는 병원은 제3자와 같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다고 크라인 국장은 언급하였다.

법무부는 이노씨브사의 취득을 막기 위하여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이와 동시에 GE사에게 소프트웨어 부문을 법무부가 승인하는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판결안을 제출하였다. 소프트웨어 부문을 사는 사람은 PREVU를 자신의 유지·관리사업에 사용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GE사가 6개월 이내에 소프트웨어 부문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매각을 계속하든가, 유지·관리사업에 사용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하게 된다. GE사는 커네티컷주의 페이루트에 본사를 두고 GE 메디컬 시스템사는 위스콘신주의 우오키샤에 본사를 두고 다종의 영상기를 제조하고 있다.

■ '98.7.14. 법무부 발표문

미 법무부, Richter's Bakery를 급식용 빵 공급 계약 관련 입찰조작으로 기소

법무부는 11월 17일, 샌안토니오에 소재한 한 제과회사가 텍사스주 남부 Bexar와 Hays 카운티에 소재한 공립 학교들에 대한 빵 및 빵류 공급계약 입찰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동 회사를 기소하였다.

샌안토니오 주재 미국지방법원에 제기된 동 소송에서 San Antonio Inc.의 Richter's Bakery는 이전에 다른 이

름으로 존재하였던 때부터 경쟁을 억압 및 제거하기로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셔먼법 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다. Richter's사는 1978년부터 1994년까지 이러한 공모에 참여하였다.

동 지역에서 구매한 빵 및 빵류 제품은 학교 아동들의 아침 및 점심 준비에 사용되었다.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당해 기소가 텍사스주 남부에서의 빵 및 빵류 제품산업의 반트러스트 위반 여부에 대한 샌안토니오 연방대심의 조사 결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동 조사는 미국 재향군인회 감사실 특수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또한 미 법무부 텍사스주 서부지역 사무소와의 협력하에, 반트러스트국 달러스 지역 사무소가 수행하였다.

셔먼법 위반으로 유죄평결을 받는 법인에 대한 최고형벌은 (a) 1,000만 달러, (b) 당해 범죄로 얻은 금전적 이익의 2배, (c) 당해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의 2배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 '98. 11. 17. 미 법무부 보도

미 법무부, 쓰레기 수거업체간 기업결합 제소

미국 법무부는 11월 17일, 미국 최대의 쓰레기 수거처리업체인 Waste Management Inc.가 대형 경쟁업체인 Eastern Environmental Services Inc.를

약 12억 달러로 취득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이를 제소하였다. 뉴욕, 플로리다 및 펜실베니아주도 동 소송에 참가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당해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뉴욕시의 주택가 고체쓰레기 처리계약에서의 경쟁이, 그리고 뉴욕, 펜실베니아 및 플로리다 주에서의 기타 고체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경쟁도 감소될 것이라고 하였다.

“비중 있는 경쟁업체 하나가 사라질 경우 뉴욕시가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및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다”라고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말하였다. “당해 계약의 규모 및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뉴욕시 납세자들은 이번 기업결합으로부터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입찰과정이 경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법무부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Vacco 뉴욕주 법무장관의 대변인인 David Corvette는 언급하였다. “Eastern 사와 Waste Management사가 여전히 동일한 계약의 낙찰대상자로 경쟁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이번 기업결합은 반경쟁적이다.”

보건 및 환경상의 우려로 인해 뉴욕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Staten Island에 소재한 유일한 매립지인 Fresh Kills 매립지를 폐쇄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받고 있다. 동 매립지의 폐쇄를 예상하여 뉴욕시 위생과는 1997년 6월 16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적격업체들에게 뉴욕시의 주택가 고체

쓰레기를 우선 가공처리를 위해 해안 집적소로 운반하고, 이를 시 외곽의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내용의 입찰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당해 요청서에 따르면 낙찰업체는 매일 12,000톤에 달하는 고체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낙찰대상인 계약은 20년 내지 30년의 기간 동안 60억 달러 이상의 가치로 추정되어, 당해 조달은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후에 뉴욕시 위생과는 당해 쓰레기처리계약을 위해 최종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룩클린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는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뉴욕시는 주택가 쓰레기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 때에 경쟁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넓은 검토과정을 거쳐 뉴욕시 위생과는 Waste Management사와 Eastern사를 포함, 단지 3개 업체만을 최종 고려대상으로 결론을 내렸다. 만일 당해 기업결합이 인가될 경우 뉴욕시는 이를 회사들과 가격 및 서비스 문제에 대한 최종 협상을 벌일 때 주요한 경쟁업체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당해 제소에 추가하여 당사자들이 곧 있을 협상에서 뉴욕시에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당사자들의 기업결합 완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치분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뉴욕시의 주택가 고체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동 소장은 당해 기업결합이 뉴욕시의 상가 쓰레기 처리サービ

스, 펜실베니아주 Allegheny, Adams, Franklin, Cumberland, Lehigh 및 Northampton 카운티의 고체쓰레기 처리서비스, 펜실베니아주 Adams, Franklin, Cumberland, Luzerne 및 Lackawanna 카운티 및 플로리다주 Hillsborough, Dade 및 Broward 카운티의 상가 고체쓰레기 수거서비스에서의 경쟁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Waste Management사는 뉴욕시 상가 고체쓰레기 처리서비스의 거의 50%, 펜실베니아주 Allegheny 카운티의 고체쓰레기 처리서비스의 58% 이상, 펜실베니아주 Adams, Franklin 및 Cumberland 카운티 고체쓰레기 처리서비스의 64%,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Lehigh 및 Northampton 카운티 고체쓰레기 처리서비스의 70%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Waste Management사는 또한 플로리다주 Hillsborough 카운티의 상가 고체쓰레기 수거서비스의 80% 이상, 플로리다주 Dade 및 Broward 카운티의 상가 고체쓰레기 수거서비스의 55%,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Adams, Franklin, Cumberland, Luzerne 및 Lackawanna 카운티의 상가 고체쓰레기 수거서비스의 50% 이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Waste Management사는 델라웨어 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사는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 9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Eastern Environmental사는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사는 뉴저지주 Mt. Laurel에 소재하고 있고, 1997년

Eastern Environmental사의 매출액은 9,600만 달러였다.

한편 이들 두 회사는 대화를 통해서, 또는 쟁송을 통해서라도, 반트러스트 관리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있다.

"우리는 현 시장에서의 우리의 지위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Waste Management사의 최고경영자인 John Drury는 말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회사가 반트러스트 우려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미국 최대의 쓰레기 수거업체들인 Waste Management사와 USA Waste Services Inc.사간의 249 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을 포함하여 일련의 쓰레기 수거업체들의 취득을 인가한 이후 입장을 바꾸고 있다.

올해 8월 공표된 당해 기업결합은 10월 이후 뉴욕주 법무장관인 Dennis Vacco의 사무실로부터 당해 기업결합이 뉴욕시의 쓰레기 수거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 왔었다.

■'98. 11. 17, 미 법무부 보도 &

'98. 11. 18, Los Angeles Times

E U

독일연방카르텔청, 유료TV시장의 합병계획에 대해 금지 결정

독일연방카르텔청은 지난 '98년 10월 6일 유료 텔레비전(Pay-TV) 시장에 진입한 CLT-UFA사(Bertelsmann사의 자회사)와 Kirch 그룹이 유료 텔레비전 방송회사인 Premiere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하려는 계획에 관하여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동 금지결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경위

금년 6월초에 CLT-UFA사가 Premiere사의 주식보유율을 현재의 37.5%에서 50%로 인상하는 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그후 6월 중순경에는 Kirch 그룹이 Premiere사의 주식지분율을 현재의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연방카르텔청은 동 계획이 실시되면 현 시점에서 Premiere사의 잔여주식 37.5%를 보유하는 Cannal+사가 Premiere사로부터 철수하고, Premiere사는 CLT-UFA사와 Kirch 그룹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출자회사가 되므로 동 계획을 하나로 통합 정리하는 계획으로 인식하여 심사에 착수하였다.

동 계획을 경쟁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기업의 표면상의 동기가 아닌

시장의 구조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금년 5월에 구주 위원회에 의하면 이미 불승인 결정된 「Bertelsmann/Kirch/Premiere」 합병의 경우와 주요 부문에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2. 금지이유

Premiere사는 이미 독일의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고 CLT-UFA사와 Kirch 그룹의 공동출자회사가 되는 경우 동사의 지위가 오히려 강화될 우려가 있다. 즉 Premiere사에 있어서 유일한 경쟁회사인 Kirch 그룹의 DFI사가 있었지만 이번 계획이 실시된 후에 DFI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Premiere사가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광고수입으로 유지되는 무료 텔레비전(Free-TV) 시장에서 소위 「그룹효과」에 의하여 경쟁이 기대되지 않는 과정상태가 유지될 우려도 있다. 이 시장에서는 CLT-UFA사가 RTL, RTL2, SuperRTL, VOX라고 하는 방송국을 산하에 두고, Kirch 그룹이 SAT1, DSF, PRO7, Kabel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산하에 두는 형태로 양 그룹이 약 9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Cannal+사가 Premiere사로부터 퇴출되고 CLT-UFA사와 Kirch 그룹은 유료 텔레비전 및 무료 텔레비전 양 시장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게 되는 결과, 유료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강화 및 무료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과정상태가 출현하게 된다.

CLT-UFA사와 Kirch 그룹은 양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 편성권을 자유롭게 조정함으로써 각 시장에서 텔레비전 방영권의 구입에 있어서 장점을 이용하고,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 전략을 최적의 상태로 운용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무료 텔레비전 시장을 포함한 형태로 프로그램의 조정에 의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텔레비전 광고시장(TV-Werbemarket)에서 경쟁이 현저하게 제한되게 된다.

■'98. 10. 7. 독일연방카르텔청 발표문

해 합작투자사업의 자본 중 69%의 지분을, 그리고 세브론사는 31%의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어떠한 경쟁 상 우려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인 바, 왜냐하면 이들 시장에서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당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당해 합작투자사업이 공동시장과 양립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98. 11. 4. 유럽위원회 보도

주요 유선방송사업자를 지배하는 합작투자사업이 포함된다.

동 취득계획은 통신부문 자유화에 대한 동 위원회의 지침과 일치하며 현재 스페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각 78%와 2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elefónica사와 Airtel사가 Retevisión Móvil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또한 Retevisión Móvil사가 이전에 스페인 이동전화 시장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회사들이 설립한 새로운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취득계획은 경쟁상 우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당해 취득계획이 공동시장 및 유럽경제지역(EEA) 협정과 양립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98. 11. 5. 유럽위원회 보도

유럽위원회, 텍사코사와 세브론사간의 합작투자사업 인가

유럽위원회는 석유 및 석유화학회사인 텍사코사와 세브론사간의 합작투자사업을 인가하였다.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선박용 윤활유와 정제 후 연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이들 모회사들의 전세계적인 활동을 포괄하게 될 것이다. 정제 후 연료에는 선박 엔진의 동력원인 선박용 연료와 산업용인 잔여 중유가 포함된다. 텍사코사와 세브론사는 차후 이 사업활동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다.

1998년 9월 29일, 동 위원회는 텍사코사와 세브론사가 "Fuel and Marine Marketing LLC"라는 명칭의 신규설립 회사에 대하여 공동 지배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기업집중 신고를 접수하였다. 텍사코사와 세브론사는 모두 종합석유회사이며 전세계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텍사코사는 당

유럽위원회, 스페인의 제3 이동전화사업자인 Retevisión Móvil S.A.의 설립 인가

유럽위원회는 Telecom Italia사가 스페인 전력 그룹인 ENDESA사 및 Unión Fenosa사와 함께 장래 스페인의 이동전화사업자로 활동할 Retevisión Móvil, S.A.의 공동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인가하였다. 당사자들은 본 취득의 목적물인 DCS 1800 기술을 기반으로 스페인에서의 제3 이동전화 인가를 획득한 것이다.

당해 취득계획은 1998년 10월 1일 동 위원회에 제출되었는 바 이는 다수회사의 합의와 계약을 포괄하고 있으며 스페인 전역을 담당하는 통신사업자 설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들의 전세계적 전략의 결과였다. 이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스페인의 제2 고정전화사업자인 Retevisión사의 설립이다. 당사자들의 기타 활동에는 스페인의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의 버스카르텔 폐지

영국의 제한적 관행법원은 11월 5일,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에서의 10개 버스사업자간의 가격고정 및 시장공유 협정에 대하여 이를 종료시켰다.

당해 협정으로 인해 버스요금은 경쟁적 시장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협정은 공정거래청(OFT) 카르텔 전담반의 장기에 걸친 조사 끝에 적발되었다.

당해 소송의 재판장인 Buckley 판사는 동 법원이 잉글랜드 북서부 지역의 이들 버스사업자들이 체결한 반경

생적인 가격고정 및 시장공유 협정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였다고 하였다.

OFT의 법무국장인 Pat Edwards는 “이들 협정은 특별히 폐해가 큰 카르텔 협정의 실례로서 리버풀 및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쟁의 증대를 통한 버스요금 인하 가능성은 배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당해 법원은 이러한 협정들이 공익에 반하는 것임을 또 한번 확인하였다. 이번 달에 입법이 기대되고 있는 새로운 경쟁법은 카르텔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OFT에 부여할 것이며 이러한 폐해를 주는 활동을 강력히 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특별한 반론 없이 진행된 심리에서 동 법원은 MTL사(리버풀), North Western Road Car사(리버풀), CMT사(리버풀), South Lancashire Transport사(세인트 헬렌스)들로부터, 그리고 David Tanner Travel사(세인트 헬렌스)와 PMT사(Stoke on Trent) 및 First Manchester사(과거에는 Greater Manchester Buses North사였음)의 소유주들로부터 이들이 당사자였던 협정을 실행하거나 장래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 그리고 OFT에의 신고대상이지만 적절히 신고되지 않은 여타의 협정들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접수하였다. 이와 함께 동 법원은 Nip-on Transport Service사(세인트 헬렌스)의 소유주, Halton Borough Transport사(Runcorn) 및 Greater Manchester Buses South사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명령을 발하였다.

동 법원은 MTL사가 First Man-

chester사(당시에는 Greater Manchester Buses North사였음) 및 Greater Manchester Buses South사와 한동안 격렬한 경쟁을 전개한 이후 1995년 이들간에 반경쟁적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MTL사는 맨체스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위의 두 회사들이 리버풀 노선 운행을 철수시키는 대가로 맨체스터 노선 운행을 중단하였다는 사정을 청취하였다. MTL사는 이후 맨체스터에서 철수시킨 차량 및 운전사 중 다수를 세인트 헬렌스 지역에 배치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동 회사는 이 지역 버스사업자인 South Lancashire Transport사, Nip-on Transport Service사 및 David Tanner Travel사에 압력을 가하여 일련의 시장공유 협정을 체결하였다.

리버풀 지역 버스운행 시장에서의 경쟁은 1996년 MTL사, North Western Road Car사, CMT사, South Lancashire Transport사 및 Halton Borough Transport사가 리버풀 내 및 그 주변의 1~2마일 노선 운임을 고정하기로 공모하고 또한 주말 및 출퇴근시간대 이외의 아동용 운임을 고정시킴으로써 한층 더 감소되었다. MTL사 및 PMT사는 이에 더하여 Wirral 지역에서의 주말 및 출퇴근시간대 이외의 아동용 운임도 고정시켰었다.

■'98. 11. 5. 영국 공정거래청 보도

유럽위원회, Stora사 - Enso사간 기업결합 인가

Stora사와 Enso사의 기업결합 계획이 11월 25일 유럽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기업결합의 결과 탄생할 기업이 유럽 제지산업에 대하여 가질 영향력 감소를 위해 이들 기업이 제시한 보완책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각각 스웨덴 및 핀란드 국적인 이 회사들 -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면 세계 최대의 종이 및 판지 제조회사가 됨 - 이 유럽위원회에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약화시키지 않음을 확신시키는 데에는 5개월이 소요되었다.

동 위원회는 Stora사와 Enso사가 유럽 신문 및 잡지용 종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향유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또한 결합된 기업이 액체용기용 판지 시장에서 갖게 될 영향력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 시장에서 Stora사와 Enso사는 전부 합쳐 대략 7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 한때는 이들 회사들이 2개 액체용기용 판지 제조 공장 중 한 개를 매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 이 회사들이 일련의 보완책을 제시한 이후 당해 기업 결합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하였다 고 하였다.

이러한 보완책은 Enso사가 Pure Pak 가공 사업부문을 액체용기용 판지의 유럽내 제2위 공급업체인 노르

일 본

웨이의 Elopak사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Stora사 및 Enso사는 또한 액체용기용 판지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규제 및 유럽연합 내로 반입되는 북미산 액체용기용 판지에 대한 수입관세 폐지에도 동의하였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는 이들 두 회사가 당해 시장이 대외 경쟁에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것을 지지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Pure Pak 사업부문의 매각은 결합된 이 기업이 액체용기 가공시장에서 철수함을 의미하는데, 이 시장은 스웨덴의 Tetra Pak사, Elopak사 및 독일 그룹인 SIG Combibloc사가 장악하고 있다. Pure Pak 사업부문은 연간 매출액이 2억 2,000만 마커(4,250만 달러)로서 Stora사와 Enso사의 매출액의 0.3%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이들 그룹은 Tetra Pak사와 Elopak사와 같은 자신들의 고객들이 북미 공급업체로부터 액체용기용 판지를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보완책은 기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 98. 11. 26, Financial Times

공취위, 도시바·NEC에 배제권고 - 우편물 구분기 담합

우정성이 발주하는 우편물의 자동판독 구분기 입찰에서 도시바사와 NEC사가 담합을 반복하여 왔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1월 12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이들 2개사에 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배제권고를 내렸다. 또한 우정성이 입찰 전에 구분기의 대수 등 납품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들 회사 모두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수주조정을 행하였으나, 독점금지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배제권고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취위는 우정성에 대하여 입찰에 관계되는 정보를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권고에 대하여 양 회사는 「우정성의 의향에 쫓아 설비계획 등의 수행에 노력한 결과로서 담합의 사실은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고 하여 응낙을 거부하고, 공취위의 심판에 대해 항소할 뜻임을 표명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양 회사는 1995년 4월부터 우정성이 발주하는 구분기의 일반경쟁입찰에서 약 절반씩 안정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입찰마다 수주예정자를 결정, 수주예정자가 된 1개사만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입찰전, 우정성의 조달사무담당자가 구분기의 대수 및 설비계획이 포함된 우

편국의 정보 등을 양 회사에 나누어 알려 주었다. 양 회사는 정보제공을 받은 회사가 각각의 입찰에 참가한다는 공통인식에 기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작년도까지 이어져 왔다.

우편물 구분기는 1978년에 도입되었으며 당초에는 우정성이 기업을 지정 수의계약으로 도시바사와 NEC사만이 수주하여 왔었다. 1987년에는 지명경쟁입찰, 1995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바뀌었으나 작년 12월에 공취위가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2월에 히타치제작소가 수주하기 전까지는 이들 두 회사가 수주를 거의 균등하게 나누어 왔다. 한편 작년 5월의 입찰분부터 우편번호를 7자리수로 개편함에 따라 신형 구분기가 본격 설치되어, 작년도에만 약 490억엔 규모의 구입계약이 발주된 상태이다.

구분기에는 편지 및 엽서를 기기의 왼쪽에서 넣어 오른쪽으로 내보내는 「우류형(右流型)」과 반대방향의 「좌류형(左流型)」의 2가지 형태가 있다. 우정성은 주로 「우류형」의 구분기에 대하여서는 도시바사, 「좌류형」은 NEC사에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히타치제작소가 참가하기 전에는 1개사만이 정보제공을 받은 물건에 대하여 응찰하여 낙찰되는 상태가 이어져 왔다.

■ 98. 11. 13, 아사히신문 & 산케이신문

공취위,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배제권고

PC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서 암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일본법인(본사 도쿄)이 인기 높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에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등을 끼워 PC업체들에 판매하였다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11월 20일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한 경쟁방법)으로 동 회사에 배제권고를 행하였다. 공취위는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여,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법인은 권고를 수락할 방침이다.

권고 내용은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995년 1월경, 사전에 응용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킨 PC용으로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인 「엑셀」의 공급을 요구해 온 후지쯔사에 대하여 「엑셀」만의 공급을 거부, 워드프로세서 「워드」와 함께 공급하는 계약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 결과 후지쯔사는 저스트 시스템(본사 도쿠시마(徳島)시)의 워드프로세서 소프트웨어인 「이타로」와 「엑셀」을 함께 설치한 PC의 판매가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PC 제조업체 15개사와 계약, 1997년 3월 이후에는 「엑셀」, 「워드」외에 스케줄 관리 소프트웨어인 「아웃룩」을 추가하여 세트로 판매하는 계약을 16개사와 체결하였다.

공취위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시

장의 점유율은 1994년도에는 「이타로」가 50%를 점유하고 「워드」가 추격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엑셀」이 타사 제품에 대하여 우위에 서 있었다. 공취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엑셀」의 인기를 이용하여 「워드」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전략적으로 끼워 팔기를 수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고 있다. 작년도의 「워드」의 점유율은 50%를 넘어, 30%대의 「이타로」와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또한 공취위는 같은 날짜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일본법인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브라우저의 판매에 관하여 경쟁 브라우저의 배포 및 선전을 제한하는 계약을 인터넷 접속업체 11개사와 맺은 것 등은 독점금지법(배타적 조건부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양 회사에 경고하였다. 공취위가 지적한 계약은 1998년 4월 폐기된 상태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공취위와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위반행위는 일체 없다고 확신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 98. 11. 21, 일본경제신문